

투 자 설 명 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이 투자설명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회사명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1층 (우:100-755) Tel: 02-3705-4921)
2. 자산운용회사명 :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 (Macquarie Shinhan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Co., Ltd.)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1층 (우:100-755) Tel: 02-3705-4921)

3. 판매회사명 : 삼성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맥쿼리증권, 교보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화증권

※ 투자회사는 위 판매회사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근거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의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이하 “GDS” (Global Depository Shares))의 경우 런던증권거래소에 각각 상장되어 실제 기 발행된 주식의 매매는 판매회사를 포함한 다른 증권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4. 작성기준일 : 2008. 3. 14.

5.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
 -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 사무실
 - 투자회사 홈페이지 (www.mkif.co.kr)
 - 금융감독위원회
 -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사이트 (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회사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제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이하 “MKIF” 또는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 자산운용(주) (이하 “MSIAM”), 맥쿼리그룹, 기타 맥쿼리그룹 계열 (이하 “맥쿼리”)에 대한 예금이나 채무가 아니며, 투자원금이나 수입의 손실 또는 환급 지연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노출됩니다. MKIF 그리고 MSIAM을 포함한 맥쿼리는 MKIF의 실적, 원금의 환급 또는 MKIF 주식에 대한 특정 수익률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본 투자설명서는 과거에 신규로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할 당시에 투자자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를 투자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매 1년에 1회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투자설명서는 MKIF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의 투자권유 혹은 청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투자설명서는 MKIF주식의 취득 또는 청약의 권유가 아닙니다. 본 투자설명서는 투자자의 투자목적이나 재무상황 또는 특정 요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투자설명서는 MKIF와 같은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가 금지된 미국과 다른 재판관할지 (이하 “기타 지역”)에서 MKIF주식의 매매를 위한 청약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1933년 미국 연방 증권법 및 그 개정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을 면제받은 경우외에는 미국에서 청약이나 매매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청약이나 매매가 허용되지 않은 기타 지역에서도 청약 또는 매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MKIF는 MKIF주식을 미국에서 등록 또는 공모할 의사가 없습니다.

본 투자설명서는 MKIF주식과 관련 투자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투자설명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2007년 3월 15일자로 작성되고 자산운용협회에 제출된 투자설명서내용의 일정부분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행되어 상장되어 있는 MKIF주식(구주)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본 투자설명서만을 의존해서는 안되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공시하는 각종 공시사항 등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투자관련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 투자설명서는 (i) 영국외에 있는 자 또는 (ii)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Financial Promotion) Order 2005 (이하 “Order”) 제 19(5)항에 해당하는 투자 전문가 또는 (iii) 고액자산 보유법인 (high net worth entities), 그리고 합법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Order 제 49(2)(a) 내지 (d)에 해당하는 자 (이하 총칭하여 “관련자”)에게만 배포될 수 있습니다. 오직 관련자만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의 청약, 권유, 모집, 매입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본 투자설명서 또는 그 내용에 따라 투자하거나 이를 근거로 투자하여서는 안됩니다. MKI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목 차

요 약

I.	투자회사의 개요	4
II.	투자정보	4
I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6

본 문

제 1 부. 투자회사의 기본정보	9
I. 투자회사의 개요	9
II. 투자정보	10
III. 수수료·보수, 과세	14
IV. 주식의 매입·환매, 분배	20
제 2 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22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22
II. 자산의 평가	27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27
IV. 주식의 매입·환매 및 이익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27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29
I. 자산운용회사	29
II. 판매회사	36
III. 자산보관회사	36
IV. 일반사무관리회사	39
V. 채권평가회사	41
제 4 부. 주주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2
I. 주주의 권리	42
II. 공시	50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I. 투자회사의 개요

1. 상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이하 “ 맥쿼리인프라” 혹은 “ 회사”)
(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35801
2. 회사의 존립기간 설립일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해산일까지
3. 분류 환매금지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의 투융자회사
4. 자산운용회사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주) (이하 “ 맥쿼리신한자산운용” 혹은 “ 자산운용사”)
(Macquarie Shinhan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Co., Ltd.)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 민투법”)에 따라 한국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들이 발행하는 주식, 채권 및 대출 등에 투자함으로써 동 투자자산의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수익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투자자에게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융자회사입니다.

2. 주요 투자전략

회사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유료도로, 항만, 에너지, 공항, 정보통신, 수자원 등과 같은 민투법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시행자의 주식, 채권 및 대출채권 또는 동사업시행자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 그리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의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대상자산은 민투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산이면서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고 레버리지 증대 또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회사의 금융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에 투자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회사는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에 따른 위험, 순자산가치변동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투자설명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미래예측정보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동 예측치는 동 투자설명서의 다른 부분에서 기술되고 있는 주요 위험요소 및 특정요소들로 인해 추후의 실제치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의 ‘ 1.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중 ‘ 2.투자위험’ 참조).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회사는 자산의 대부분을 민투법에 근거한 중장기 인프라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동 인프라자산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래의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어 있는 최소통행료수입보장으로 인하여 향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현금흐름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특성 (Heavy tail)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투자회사는 5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상 등급평가를 하는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관계로 이와 같은 등급평가는 회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평가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는 아닌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는 다음 5단계로 구분됩니다.

위험단계 1	위험단계 2	위험단계 3	위험단계 4	위험단계 5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또한, 개인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은 3억원 이하 투자의 경우 5.5% (주민세 포함), 3억원 초과시 15.4% (주민세 포함)가 적용됩니다¹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회사는 다음의 투자자군에 적합한 투자자산으로 예상됩니다.

- 가.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
- 나. 통행량 증가 및 자본구조 최적화에 따른 성장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
- 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혜택을 기대하는 개인투자자 (2008년말까지)

5. 기준가격

순자산가치 총액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건별 자산가치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자산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포함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자지분과 대출채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대한 전환사채를 제외)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가치의 경우, 순자산가치 총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상 회사의 순자산가치 총액과 주당순자산가치는 회사 자산의 재평가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대한 전환사채와 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 시장이나 독립적인 투자자가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자산의 시장가치나 미래 순수익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당순자산가치는 기간별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내재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순자산가치 (NAV)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발행주식수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
기준가격 공시시기	분기별 공시(민투법에 의해 매일 공시하는 의무는 면제됨)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분기별 영업보고서에 포함

¹ 본 요약 부분은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기준 국내 세법에 의거한 것으로 해당일 이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 소유 및 처분과 관련된 과세문제에 대하여 각자 전문가의 자문 및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맥쿼리신한자산운용은 간투법에 따라서 자산운용업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허가 조건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한 운용전문인력을 3인 이상 상근 임직원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자산운용협회에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맥쿼리신한자산운용의 임직원 명단입니다._

성명	출생년도	자산운용협회등록번호	담당업무
이재균	1964	06-02323-0002	수석운용전무
김중호	1962	06-02323-0004	자산관리담당상무
박종혁	1967	08-02323-0005	자산매입담당이사
원범식	1967	06-02323-0001	자산관리담당이사
이정석	1973	06-02323-0003	자산관리담당차장

7. 투자실적 추이

아래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분	1년차 (2003.12.12 ~ 2003.12.31)	2년차 (2004.1.1 ~ 2004.12.31)	3년차 (2005.1.1 ~ 2005.12.31)	4년차 (2006.1.1 ~ 2006.12.31)	5년차 (2007.1.1 ~ 2007.12.31)
(1) 분배수익률 ⁽¹⁾	10.39%	8.41%	10.81%	6.27%	6.49%
(2) 비교지수 ⁽²⁾	-	-	-	-	-

주: (1) 1년차~3년차 분배수익률: 상장이전으로 실제 분배금을 투자자들의 연평균투자금액으로 나눈 수익률.
4년차~5년차 분배수익률: 상장이후의 분배수익률은 연간 총분배금 지급액을 당해년의 마지막 거래일 주시가격으로 나눈 수익률.
(2) 비교지수: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로서 적절한 비교 지수가 없어 비교지수 표시를 생략함.

I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주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합 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회사에 부과되는 수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¹⁾	매분기말로부터 15영업일
	판매회사 보수	0.00%	-
	자산보관회사 보수	0.030%	매분기말의 익영업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75%	매분기말의 익영업일
기타 비용 ⁽²⁾	0.045%	2007년 1년간 발생한 금액 기준
총 보수·비용 비율	주(3) 참조	

- 주: (1) 회사의 정관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회사는 회사의 투자운용에 대하여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자산운용회사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매년 각 분기가 종료되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운용위탁계약서상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산정, 지급됩니다. 자산운용회사에 지급되는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의 본문에서 각 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된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1부. 투자회사의 기본정보’ 의 III.수수료·보수, 과세 중 ‘ 2.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참조).
- (2) 기타 비용은 순자산대비 2007년 1년간 상기 업무위탁기관 외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입니다.
- (3) 상기 (1)의 자산운용보수 및 성과보수가 변동적이므로 회사의 총 보수·비용 비율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2. 과세

이하에서 기술한 내용은 투자회사 및 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의 세법규정을 요약한 것인 바, 이는 회사 관련 과세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세무의견은 아니므로 회사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각자 전문가의 자문 및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가. 회사에 대한 과세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의한 투자회사로서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매 회계년도에 배당결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회계년도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 주주에 대한 과세

1) 개인 거주자에 대한 과세

거주자인 개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관련 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거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당해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그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5% (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하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장외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33% (주민세 포함), 그 외의 경우에는 22% (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0.15%의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2) 내국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1) 법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인정됨에 따라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 (2)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액 및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고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증권거래세는 개인 주주와 동일합니다.

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7.5% (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는 거주지국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가 당해 회사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11% (주민세 포함) 또는 양도차익의 27.5% (주민세 포함) 중 낮은 금액이 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의하여 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보유했던 GDS 수량 포함)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개인 주주와 동일합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매입, 환매 절차 등

본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의 경우 한국의 증권선물거래소에, GDS의 경우 런던증권거래소에 각각 상장되어, 회사가 기 발행한 주식의 매입 및 환매는 증권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매매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주식의 매매가격은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 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은) (고객성명) 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2008. . . .
판매직원 취득권유인 _____서명 또는 (인)

6. 자본금(수탁고) 추이

아래 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2년간의 반기별 자본금 총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연 도	현 재 (07.12.31)	6개월전 (07.6.30)	1년전 (06.12.31)	1년 6개월전 (06.6.30)	2년전 (05.12.31)
자본금	1,652,985	1,692,102	1,757,636	1,819,950	1,258,700
자본금 증가율 ¹⁾	(2.31%)	(3.73%)	(3.42%)	44.59%	N/A

1) 6개월전 자본금대비 증가율

7.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 주주총회의 결의
- 나. 합병
- 다. 도산
- 라.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마. 금감위 명령에 따른 등록취소

위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회사는 민투법에 의한 실시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국내 사회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시행자들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대출 등에 투자하여, 동 투자자산의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수익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융자회사입니다.

2. 주요 투자전략

회사의 주요 투자전략 목표는 다양한 인프라자산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회사 자본을 증대하고 현금배당을 함으로써 주주에게 매력적인 수익을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민투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 수입이 장기적으로 물가와 연동된 자산, 자금재조달을 통해 회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자산, 가능하면 회사가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회사는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유동성에 따른 위험, 순자산가치변동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 주식에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께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본문 제2부 “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 부문에서 각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를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 의 ‘ 1.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 중 ‘ 2.투자위험 ’ 참조).

4. 투자위험에 적합한 주주 유형

회사는 자산의 대부분을 민투법에 근거한 운영기간이 중장기인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인프라자산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래의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어 있는 최소통행료수입보장으로 인하여 향후 안정적인 현금흐름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투자회사는 5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상 등급평가를 하는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관계로 이와 같은 등급평가는 회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평가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는 아닌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는 다음 5단계로 구분됩니다.

위험단계 1	위험단계 2	위험단계 3	위험단계 4	위험단계 5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개인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은 3억원 이하 투자의 경우 5.5% (주민세 포함), 3억원 초과시 15.4% (주민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회사와 같은 투자회사의 경우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바, 액면가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세율을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전, 재정경제부)를 통해 확인한 회사의 입장은 분배금지급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일의 회사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투자한 자산의 경우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회사의 현금흐름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분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인 바, 회사의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회사는 다음의 투자자군에 적합한 투자자산으로 예상됩니다.

- 가.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
- 나. 통행량 증가 및 자본구조최적화에 따른 성장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
- 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혜택을 기대하는 개인투자자 (2008년말까지)

5. 기준가격

순자산가치 총액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건별 자산가치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자산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포함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자지분과 대출채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대한 전환사채를 제외)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가치의 경우, 순자산가치 총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상 회사의 순자산가치 총액과 주당순자산가치는 회사 자산의 재평가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대한 전환사채와 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 시장이나 독립적인 투자자가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자산의 시장가치나 미래 순수익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당순자산가치는 기간별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내재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순자산가치 (NAV)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발행주식수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
기준가격 공시시기	분기별 공시(민투법에 의해 매일 공시하는 의무는 면제됨)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분기별 영업보고서에 포함

6. 운용전문인력

맥쿼리신한자산운용은 간투법에 따라서 자산운용업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허가 조건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한 운용전문인력을 3인 이상 상근 임직원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자산운용협회에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맥쿼리신한자산운용의 임직원 명단입니다.

성명 (협회등록번호)	연령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기간
			운용중인 다른간접 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이재균 (06-02323-0002)	1964	수석 운용전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재균 전문은 맥쿼리그룹 입사 전 신한은행에서의 14년 경력을 포함하여 금융 및 은행 부문에서 17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 1990년 신한은행 입행, 국제부, 뉴욕지점/투자금융부 등에서 투용자업무 담당 - 일해연구소(현 세종연구소) 경제사회 연구실 근무 - 2003년 6월부터 맥쿼리인프라 운용 담당
김중호 (06-02323-0004)	1962	자산관리 담당상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중호 상무는 맥쿼리그룹 입사 전 다음과 같은 경력을 포함하여 자산관리부문에서 20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 호주 Connel Wagner Group 근무 - 영국 Mott Macdonald Group 근무 - BHP Engineering 근무 - Egis consulting/GHD 근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유료도로 운용) - 2004년 8월부터 맥쿼리인프라 운용 담당
박종혁 (08-02323-0005)	1967	자산매입 담당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종혁 이사는 맥쿼리그룹 입사 전 국민은행 투자금융 부서에서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 국민은행 근무 (3개 항만시설과 7개 유료도로 및 2개의 부동산 프로젝트의 매니저)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위원으로 자문활동
원범식 (06-02323-0001)	1967	자산관리 담당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원범식 이사는 맥쿼리그룹 입사 전 인프라관련 건설 및 자산 관리부문에서 13년간 근무했으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산건설(주) 국제영업부 민자사업 담당 / 외주관리 및 구매 담당 - 2005년 1월부터 맥쿼리인프라 운용 담당
이정석 (06-02323-0003)	1973	자산관리 담당차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정석 차장은 건설과 자산관리 부문에서 12년이상 근무했으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Parsons, Brinckerhoff, Quade & Douglas Co., Ltd - Parsons, Brinckerhoff Asia Co., Ltd. - 2004년 12월부터 맥쿼리인프라 운용 담당

7. 투자실적

다음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은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사이트 (www.amak.c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

구 분	1년차 (2003.12.12 ~ 2003.12.31)	2년차 (2004.1.1 ~ 2004.12.31)	3년차 (2005.1.1 ~ 2005.12.31)	4년차 (2006.1.1 ~ 2006.12.31)	5년차 (2007.1.1 ~ 2007.12.31)
(1) 분배수익률 ⁽¹⁾	10.39%	8.41%	10.81%	6.27%	6.49%
(2) 비교지수 ⁽²⁾	-	-	-	-	-

(1) 1년차~3년차 분배수익률: 상장이전으로 실제 분배금을 투자자들의 연평균투자금액으로 나눈 수익률.
4년차~5년차 분배수익률: 상장이후의 분배수익률은 연간 총분배금 지급액을 당해년의 마지막 거래일 주식가격으로 나눈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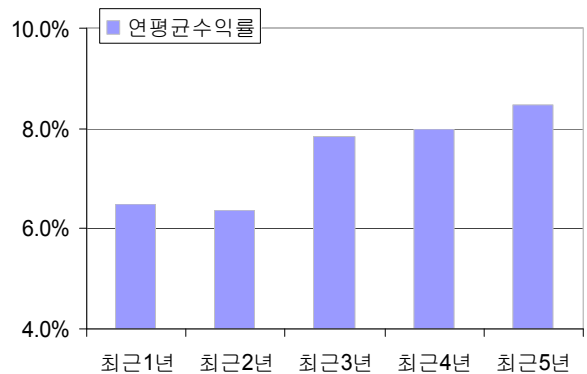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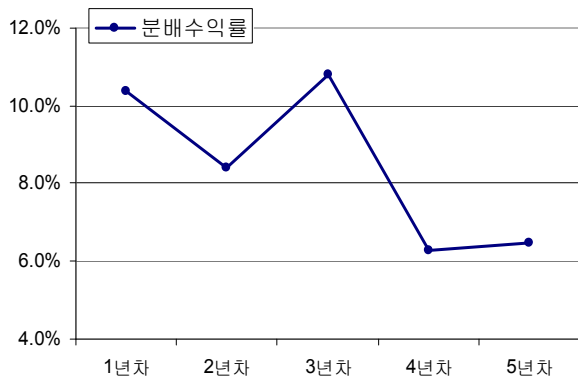
(2) 비교지수: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로서 적절한 비교 지수가 없어 비교지수 표시를 생략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구 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4년	최근5년
연평균수익률(%)	6.49%	6.38%	7.84%	7.98%	8.46%

(1) 최근3년 ~5년 연평균수익률: 상장이전으로 실제 분배금을 투자자들의 연평균투자금액으로 나눈 수익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정함
최근1년 ~2년 연평균수익률: 상장이후의 분배수익률은 연간 총분배금 지급액을 당해년의 마지막 거래일 주식가격으로 나눈 수익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정함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주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회사의 주식거래시 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외에 주식거래에 따른 별도수수료는 없습니다.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총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회사는 간투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관련 보수 및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¹⁾	매분기말로부터 15영업일
판매회사 보수	0.00%	-
자산보관회사 보수	0.030%	매분기말의 익영업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75%	매분기말의 익영업일
기타 비용 ⁽²⁾	0.045%	2007년 1년간 발생한 금액 기준
총 보수·비용 비율 ⁽³⁾	주(3) 참조	

주: (1) 회사의 정관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회사는 회사의 투자운용에 대하여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자산운용회사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매년 각 분기가 종료되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운용위탁계약서상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산정, 지급됩니다. 자산운용회사에 지급되는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의 본문에서 각 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된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부. 투자회사의 기본정보'의 III.수수료·보수, 과세 중 '2.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참조).

(2) 기타 비용은 순자산대비 2007년 1년간 상기 업무위탁기관 외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입니다.

(3) 상기 (1)의 자산운용보수 및 성과보수가 가변적이므로 회사의 총 보수·비용 비율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투자자들이 향후 1년, 3년, 5년 및 10년간 부담하게 될 총보수 및 비용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회사의 시가총액, 투자약정액, 혹은 순자산규모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들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측치는 부정확할 수 밖에 없고 더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향후 5년 및 10년치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가. 운용보수 (Management fee)

운용보수는 분기별로 후불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회사의 순투자가치와 회사, 회사가 완전 소유하는 회사, 신탁 (Trusts) 또는 기타 법인이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제외한) 투자자산에 대해 장래 투자를 확정 한 약정금액 총액의 합계금액이 1조 5,000억 이하인 경우의 자산운용보수 산정식:

$$[R \times (NIV + C) \times 1.15\% + (1 - R) \times (NIV + C) \times 1.25\%] \times (N / 365)$$

회사의 순투자가치와 회사, 회사가 완전 소유하는 회사, 신탁 (Trusts) 또는 기타 법인이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제외한) 투자자산에 대해 장래 투자를 확정 한 약정금액 총액의 합계금액이 1조 5,00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자산운용보수 산정식:

$$[R \times T \times 1.15\% + R \times (NIV + C - T) \times 1.05\% + (1 - R) \times T \times 1.25\% + (1 - R) \times (NIV + C - T) \times 1.10\%] \times (N / 365)$$

여기서,

R =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비율 ; $C / (NIV + C)$

NIV = 해당 분기의 순투자가치

C = 회사, 회사가 완전 소유하는 회사, 신탁 (Trusts) 또는 기타 법인이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제외한) 투자자산에 대해 장래 투자를 확정 한 약정금액 총액

T = 1조 5,000억원

N = 해당분기의 일자수

회사의 해당분기의 순투자가치 (NIV)의 계산은 ①회사의 시장가치와 ②외부차입금을 더하고 ③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을 차감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①회사의 시장가치

(가) 어느 분기에 대하여 해당 분기의 매 거래일 동안 발행되어 있는 매일 거래종료시점의 평균주수에, 동 거래일 동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량 가중평균 주당 거래가격을 곱한 가치;

(나) 주식의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주식 상장폐지일이 포함된 해당 분기동안 주식 상장폐지일까지 발행되어 있는 매일 거래종료시점의 평균주수에 동 거래일 동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량 가중평균 주당 거래가격을 곱한 가치;

② 외부차입금액

분기말로 회사 및 회사의 완전소유회사, 신탁 또는 기타 법인의 외부차입금액 (그러나 회사가 지배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지분을 특별하게 보유한 운영 또는 프로젝트 회사, 신탁 또는 기타 법인이 보유한 차입금은 제외함)

③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

분기말일자로 회사 및 회사의 완전소유회사, 신탁 또는 기타 법인이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에 투자한 금액 총계 (그러나 회사가 지배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지분을 특별하게 보유한 운영 또는 프로젝트의 회사, 신탁 또는 기타 법인이 보유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은 제외함)

운용보수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회사는 자산운용회사에게 현금으로 이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지급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어느 분기의 운용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를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주식매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에게 발행되는 회사 주식수는 자산운용회사가 회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 운용보수액을 동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 동안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회사의 모든 주식의 가중평균거래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합니다

나. 성과보수 (Performance fee)

자산운용회사는 어느 분기의 수익 (모든 분배 재투자 포함)이 양의 값을 가지고, 당해 분기의 수익과 잉여금의 합계가 당해 분기의 기준수익(benchmark)과 결손금의 합계를 초과하면, 분기별로 계산하여 지급될 성과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가 분배수입 및 자본이득을 통해 기준 수익보다 큰 수익을 주주에게 제공할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회사로부터 성과보수를 받습니다. 분기동안의 수익이 기준수익 미만이면, 결손금은 이월되고 미래 초과수익을 상쇄시킬 것입니다. 누적 결손금이 상쇄된 후에야 성과보수는 지급될 것입니다.

성과보수는 분기의 수익과 잉여금의 합계가 그 분기별 기준수익과 이월된 결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입니다.

각 분기별 성과보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과보수 = 20% × (수익 + 잉여금 - 기준수익 - 결손금):

여기서 “ 수익 ” = A1 + A2 이며,

$$A1 = S1x\left(\frac{B1 - C1}{C1}\right)$$

A1 = 모든 주식 (직전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 동안 발행된 추가주식과 분기에 발행된 추가주식은 제외)에 적용되는 해당 분기의 수익

S1 = 해당 분기와 관련하여, 직전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동안 발행된 추가주식을 제외하고 직전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동안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평균좌수를 위 거래일 기간동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거래량 가중평균 주당 거래가격으로 곱한 수

B1 = Standard and Poor' s. 또는 회사와 운용회사에 의해 선정된 다른 법인 (이하, “ 보고대행기관 (Reporting Agency) ”)에 의해 산정되거나 보고된 것으로 해당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동안 주식에 대한 매일종가합계지수의 평균치

C1 = 보고대행기관에 의해 산정되거나 보고된 것으로, 직전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동안 주식에 대한 매일종가합계지수의 평균치.

한편,

$$A2 = S2x\left(\frac{B2 - C2}{C2}\right)$$

여기서

- A2 = 해당 분기동안 발행된 추가주식에만 적용되는 수익으로 해당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간 발행된 추가주식은 제외하고 직전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간 발행된 추가주식은 포함
- S2 = 해당 분기동안 발행된 추가주식수 (해당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간 발행된 추가주식수는 제외하고 직전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간 발행된 추가주식수는 포함)를 동 추가주식의 주당 발행가로 곱한 수
- B2 = 보고대행기관에 의해 산정되거나 보고된 것으로 해당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동안 주식의 매일종가합계지수의 평균치
- C2 = 추가주식 발행일자에 추가모집시 발행된 추가주식의 발행가에 기초하여 주식의 합계지수가치로 산정된 추가주식의 최초합계지수가치

“ 추가모집 ” 은 성과보수가 산정되는 분기내에 회사의 최초주식공모 또는 최초주식공모와 관련한 초과배정옵션의 행사를 제외한 모집을 의미합니다.

“ 추가주식 ” 은 주식의 추가모집 때 발행된 주식총수를 의미합니다.

“ 기준수익 ” = BR1 + BR2 이며,

$$BR1 = S1 \times (1.08^{N/365} - 1)$$

여기서

- BR1 = 모든 주식 (직전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 동안 발행된 추가주식 및 해당 분기에 발행된 추가주식은 제외)에 적용되는 해당 분기 기준수익
- S1 = 수익의 정의에 있는 “ S1 ” 과 동일한 의미를 지님.
- N = 해당 분기 일수.

또한:

$$BR2 = S2 \times (1.08^{N/365} - 1)$$

여기서

- BR2 = 해당 분기동안 발행된 추가주식에만 적용되는 기준수익으로 해당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간 발행된 추가주식은 제외하고 직전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간 발행된 추가주식은 포함
- S2 = 수익의 정의에 있는 “ S2 ” 와 동일한 의미를 지님
- N = 추가주식의 상장일로부터 분기말일 (당일 포함)까지의 일수

어느 기간동안의 “ 결손금 (deficit)” 은 상장후성과보수 지급시기 도래 후의 (또는, 상장후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상장일로부터) 각 해당 분기에 대한 기준수익이 동 분기의 수익을 초과하는 원화 금액 총계를 말하는바, 산정이 이루어진 분기는 제외됩니다.

“ 잉여금 (surplus)” 은 상장후성과보수 지급시기 도래 후의 (또는 상장후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상장일로부터) 각 해당 분기에 대한 수익이 동 분기의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각 분기별 원화금액 총계를 말하는 바, 산정이 이루어진 분기는 제외됩니다. 분기 성과보수는 각 분기 마지막 날에 지급시기가 도래하고, 그날 이후 15영업일 내에 회사가 자산운용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어느 분기의 성과보수의 일부 또는 전체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에게 발행될 주식의 수는 자산운용회사가 주식의 매입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금액을 그 성과보수가 지급되는 관련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 동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모든 주식의 거래량 가중평균거래가격으로 나눈 금액과 동일합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이하에서 기술한 내용은 투자회사 및 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의 세법 규정을 요약한 것인 바, 이는 회사 관련 과세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세무의견은 아니므로 회사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각자 전문가의 자문 및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회사는 간투법에 의한 투자회사로서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매 회계년도에 배당결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회계년도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 주주에 대한 과세

1) 개인 거주자에 대한 과세

거주자인 개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관련 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거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당해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5% (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런데 회사와 같은 투자회사의 경우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바, 이러한 보유주식부분의 액면가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세율을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통해 확인한 회사의 입장은 분배금지급기준일의 재무제표상 회사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거주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개인투자자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 (투자회사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 신고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하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장외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33% (주민세 포함), 그 외의 경우에는 22% (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15%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2) 내국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1) 법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인정됨에 따라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 (2)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액 및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고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증권거래세는 개인 주주와 동일합니다.

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7.5% (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는 거주지국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회사를 비롯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가 당해 회사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11% (주민세 포함) 또는 양도차익의 27.5% (주민세 포함) 중 낮은 금액이 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의하여 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보유했던 GDS 수량 포함)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개인 주주와 동일합니다.

IV. 주식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과 환매

본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의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GDS의 경우 런던증권거래소에 각각 상장되어, 회사가 기 발행한 주식의 매입 및 환매는 증권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매매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 이익 등의 분배

아래의 표는 2002년 12월 31일 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회사의 분배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회계기간을 1년 (1/1 ~ 12/31)으로 조정함에 따라 분배금 지급 주기는 이사회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	총 분배금 (백만원)	주당 분배금 (원)
2002년 12월 31일.....	0	0
2003년 6월 30일	1,700.0	185.7
2003년 12월 31일.....	3,221.8	85.5
2004년 6월 30일	13,887.6	212.7
2004년 12월 31일.....	18,879.3	127.1
2005년 6월 30일	49,241.2	271.4
2005년 12월 31일.....	53,550.0	223.1
2006년 6월 30일	64,698.0	200.0
2006년 12월 31일.....	71,167.8	220.0
2007년 6월 30일	71,167.8	220.0
2007년 12월 31일.....	71,167.8	220.0

간투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는 주주들에게 이익분배 또는/그리고 이익초과분배의 형태로 분배를 결의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는 해당 회계기간중 회계상의 이익을 초과하여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입니다. 그러한 이익초과분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원금회수분 및 자금재조달 (refinancing)을 통해 유입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익으로부터 배당소득공제를 지속적으로 부여받기 위해 주주들에게 회계상이익의 100%를 매 6개월마다 (반기) 분배를 선언하고 지급할 계획이나, 이사회 결의 또는 회사의 향후 분배정책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분배가능이익은 한국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다 이월이익잉여금을 더하고, 이월결손금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잉여금을 차감한 수치를 말합니다. 추가로 필요시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통해 주주들에게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회계기간 중 비경상적인 비용발생으로 회사의 분배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된 경우, 회사는 주주들이 받게 될 현금분배금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주들에게 이익초과분배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금 설정비용이나 운용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성과보수 등과 같이 비반복적이거나 일회성의 항목이 위에서 언급한 비경상적인 비용발생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회계기간 중 이익항목이 회사의 분배가능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회계기간 중 회계상 이익의 100%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회사는 특정한 회계기간 중 분배가능이익의 90%이하로 분배하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분배정책은 회사의 적정 운용비용을 유지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배가능이익의 실현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법정 최저순자산액인 50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기술한 바는 현 회사의 분배정책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배정책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예: 무분배의 선언 내지는 분배 축소). 분배에 대한 결의는 회사 이사회의 독자적인 권한이며 분배의 형태, 횟수, 금액 등은 회사의 이익, 재무상태, 영업성과, 계약상의 제약조건,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회사는 분배금을 원화로 지불합니다.

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주식으로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주식분배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전에 상기 목적을 위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주식분배를 결정한다면 주주들은 현금 대신에 주식의 형태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위탁수수료나 각종 인지대와 같은 거래비용의 부담없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주식분배에 따라 발행되는 새 주식의 가격계산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시의 주식의 가격에 의거할 것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거래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제2부. 투자회사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회사의 주요 투자전략 목표는 민투법에 따라 다양한 인프라자산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회사 자본을 증대하고 현금배당을 함으로써 주주에게 매력적인 수익을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다음을 통해 위의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 가. 민투법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시행자들에게 투자한다.
- 나. 자산운용회사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래성있는 인프라자산을 발굴한다.
- 다. 대출, 비상장 채권 또는 주식, 주식연계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 라. 수입이 장기적으로 물가와 연동된 인프라자산에 투자한다.
- 마. 회사의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시행자에 투자한다.
- 바. 민투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인프라자산 및 모든 단계별 인프라자산의 사업시행자에 투자한다.
- 사. 레버리지 증대 또는 자금제조달을 통해 회사의 금융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시행자에 투자한다.
- 아. 특정 인프라자산이 내재하고 있는 투자 위험에 상응하는 기대수익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투자한다.
- 자.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략적, 상업적, 재무적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집중투자한다.

국내에서의 인프라 투자대상은 전통적으로 유료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을 운영하는 사업시행자들입니다. 회사는 기존의 투자군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집행함과 동시에 민투법에서 허용된 다른 자산군 (예: 항만, 에너지, 수자원 등)의 사업시행자들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2007년12월에는 부산 신항만2-3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투자위험

아래에 기술된 위험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기술된 회사 및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위험뿐만 아니라 현재 회사에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인 위험이나 아직 미미하다고 간주되는 위험들도 추후 회사의 실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들은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에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투자위험에 대한 내용은 2006년 3월 7일자로 발행하여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www.amak.or.kr)에 게시된 상장 당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과 관련된 위험**
- 1) 회사의 향후 미래의 영업성과는 예측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투자대상자산은 국내에서는 새로운 투자분야의 자산이며, 이에 그 운영기간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 2)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교체시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 3) 회사는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이자수입이나 배당금 등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 4) 회사의 투자 중 일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이나 과반수 미만 지분의 형태로 투자되었으며, 그 결과 회사는 사업시행자들의 해당분야에 대한 영업, 배당, 이자지불, 기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5) 회사의 일부 기투자자산 및 미래투자자산의 주식 또는 채권은 비유동적인 자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투자자산은 매각시 공정가치 이하의 가격에 매각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순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6) 회사의 투자가 회사의 투자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7) 회사에는 향후 투자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8) 회사의 사업에 국내법 규제 체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9) 회사가 관련 세법의 특정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세금 지출이 늘어나 투자자의 수익 배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0) 회사의 자산운용회사는 또한 회사의 법인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 11) 다수 사업시행자에 대한 회사의 투자지분은 매각에 대한 제한을 받으며, 이는 투자지분의 유동성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 12) 회사의 합병 및 피흡수 합병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가치의 증대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13) 회사는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에게 각각
-

주요 임무들을 적절히 배분해야 하며 이 회사의 성과는 이러한 당사자들의 역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14) 회사의 자산운용회사와 다른 용역 제공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에 당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5) 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핵심 운용인력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회사의 투자와 관련된 위험

- 16) 회사가 투자한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및 지하철 요금을 회사가 통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17) 교통량이나 교통량 증가율의 감소는 회사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18)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의 관련 실시협약에 의한 통행료수입보장에 있어 통행료수입 부족분 전부가 적시에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19) 관련 주무관청들이 재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주무관청들이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통행료수입보장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0)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들은 통행료수입과 자금재조달 (refinancing)을 통한 이익의 전부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1)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들의 운영자산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소멸되며 통행료수입도 사라지게 됩니다.
- 22)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6개의 사업시행자는 현재 건설중인 자산을 보유중인 바, 건설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사업시행 지연이나 추가비용 또는 수입감소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23) 불가항력 등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유료도로, 교량, 터널, 기타 다른 인프라 투자자산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4) 사업시행자들의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자액 또는 대출액에 대한 낮은 투자수익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5)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업시행자들은 회사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상당 수준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운영의 유연성을 제한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26) 사업시행자는 회사의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선순위대출 및 후순위대출금을 대출기간동안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7)** 회사가 투자한 많은 사업시행자들은 시장금리 상승시, 보다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28)** 회사의 모든 투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석이나 구속력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매우 복잡한 정부의 인-허가, 실시협약 등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들이 주어진 규정이나 실시협약을 따르는 것을 실패한다면 사업시행자들은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당하거나 더 나아가 해당 인프라자산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 29)** 회사가 투자하는 사업시행자는 투자자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파괴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30)** 사업시행자에 대한 향후 투자기회에 있어서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신규투자를 통한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31)**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들이 운영하는 인프라자산은 대체 인프라자산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32)**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들이 운영하는 유료도로, 교량, 터널과 지하철 이용자들은 해당 자산의 통행료에 대한 그 어떤 조정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여론의 압력에 의해 관련정부기관이 통행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33)**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들은 국가신용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대상

회사는 민투법 제 41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투융자회사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유료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공항, 정보통신, 수자원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시행자들의 주식, 채권 및 대출채권 또는 동 사업시행자들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그 밖에 위의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내의 자산에 투자하여, 부족한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이바지하고, 또한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의 배당수익 또는 이자수익 등을 통한 수익창출에 투자목적이 있습니다.

설립 후부터 본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까지 회사는 총 2조1,801억원을 대상자산에 투자 또는 투자 약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08년 3월 14일 현재 회사는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14개 유료도로(교량 및 터널포함), 지하철, 항만사업 각 1개 등 총 16개의 국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 또는 투자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가 투자 또는 투자 약정한 자산 내역을 요약한 표입니다. 해당 자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가 2008년 3월 13일자로 발행하여 회사의 홈페이지 (www.mkif.co.kr) 에 게시한 연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명	현황	투자 약정 형태 (10 억원)				% 사업시행자 보유율
		주식	후순위	선순위	합계 (10억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운영중	58.2	51.7	-	109.9	24.1
백양터널	운영중	1.2	-	1.8	3.0	100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	운영중	28.9	-	73.3	102.2	75.0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중	13.1	35.2 ⁽¹⁾	142.0	190.3	100.0
우면산터널	운영중	20.3	-	-	20.3	36.0
천안-논산 고속도로	운영중	87.7	182.3	-	270.0	60.0
수정산터널	운영중	47.1	19.3	70.2	136.6	100.0
대구-부산 고속도로	운영중	49.2	-	-	49.2	6.5 ⁽²⁾
대구광역시 제4차 순환도로	운영중	57.5	32.0	-	89.5	85.0
마창대교	건설중	49.6 ⁽³⁾	51.2	-	100.8	49.0/100.0 ⁽³⁾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중	48.6	87.4	-	136.0	15.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중	40.9	33.5	-	74.4	24.5
인천대교	건설중	74.5	89.4	188.0	351.9	41.0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중	129.6 ⁽⁴⁾	77.0	-	206.6	35.0/67.0 ⁽⁴⁾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중	-	80.0	-	80.0	-
부산 신항만2-3단계	건설중	66.4	193.0	-	259.4	30
합계	N/A	772.8	932.0	475.3	2,180.1	-
비율 (%)	N/A	35.4	42.8	21.8	100.0	-

(1) 운전자금 32 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2) 회사가 보유 전환사채를 2008년 9월 시점에 전액 전환 (이자금액 포함) 한다고 가정

(3) 운영개시 시점에 사전동의한 바대로 건설사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 (MKIF에게 실시협약 회사 지분의 100%를 매각)

(4) 건설출자자와 합의된 가격범위중 최대 가격으로 지분의 32% 추가 약정한 금액 포함 (주식지분을 67%까지 추가취득 예정)

4. 투자제한

회사는 민투법 제 41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투융자회사로서 다음의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 가. 인프라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취득
- 나. 인프라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 다. 인프라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투융자회사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라. 금감위가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투자

회사는 위에서 정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투법 제44조에 따라 간투법 제88조의 “ 자산운용의 제한”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회사는 간투법에 의거 투자자산을 평가합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대출채권	취득원가
전환사채(CB)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양도성예금증서(CD)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정기예금	취득원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회사의 주요 투자자산은 비상장주식 및 대출채권이며 매매는 주식양수도계약 및 대출채권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바, 투자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수반되는 중개회사는 필요하지 않아 별도의 중개회사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IV. 주식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1. 주식의 매입 및 환매 관련 유의사항

본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의 경우 한국의 증권선물거래소에, GDS의 경우 런던증권거래소에 각각 상장되어, 회사가 기 발행한 주식의 매입 및 환매는 증권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매매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주식의 매매가격은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간투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는 주주들에게 이익분배 또는/그리고 이익초과분배의 형태로 분배를

결의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는 해당 회계기간중 회계상의 이익을 초과하여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입니다.

회사는 주주들에게 국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익으로부터 배당소득공제를 지속적으로 부여받기 위해 회계상이익의 100%를 매 6개월마다(반기) 분배를 선언하고 지급할 계획이나, 이사회결의 또는 회사의 향후 분배정책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분배가능이익은 한국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다 이월이익잉여금을 더하고, 이월결손금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잉여금을 차감한 수치를 말합니다. 추가로 필요시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통해 주주들에게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에 부과되는 과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 투자설명서 ‘제1부. 투자회사의 기본정보’ 중 ‘III. 수수료·보수, 과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산운용을 맥쿼리신한자산운용에 위탁하였으며 특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판매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기관과의 계약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06년 3월 7일자로 발행하여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www.amak.or.kr)에 게시된 IPO 당시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주) (“ 맥쿼리신한자산운용” 혹은 “ 자산운용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1층 (우:100-755) 전화: 02-3705-4921
회 사 연 혁	(1) 2002년 10월 17일 설립 (2) 맥쿼리인프라는 2002년 12월 13일 맥쿼리신한자산운용과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 (3) 2005년 11월 11일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 허가 취득

2. 주요 업무

가. 업무위탁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 투자, 사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투법, 증권거래법, 상법 등 기타 관련 법률과 회사의 정관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위탁계약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과 관련된 투자를 결정하고 회사 이사회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은 정관, 투자의 기본방침, 투자지침,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개요

1)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조건에 따른 해지 또는 투융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은 유효합니다.

2)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 자세한 내용은 본 투자설명서 ‘ 제1부. 투자회사의 기본정보’ 중 ‘ III. 수수료·보수, 과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산운용회사의 권한

회사의 자산운용위탁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정관 및 회사로부터의 서면 지침에 명시된 제약을 따르는 범위내에서 자산운용회사는 항상 다음의 권한을 포함하여(단, 다음의 권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회사의 자산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1) 회사 대리인, 중개인, 딜러 또는 컨설턴트 등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지침을 전달하는 것
- (2) 자산운용회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체결한 계약, 약정 또는 거래에 회사가 구속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러한 계약, 협약, 거래를 이행하는 것.
- (3) 유가증권이나 투자의 매매, 처분을 지시하는 것

- (4) 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다. 자산운용회사의 비용 및 보상

회사는 아래 나열된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여 (이에 제한되지 않음) 자산운용회사가 회사를 위해 비용을 집행하거나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위탁계약상의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하고 문서로 정리된 제반 비용들을 지불, 보장 또는 환불하고 보상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 1) 투자유가증권의 거래보수(들)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의 취득, 처분, 보험, 보관 및 거래와 관련한 비용
- 2) 회사에 대한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담보에 대한 비용 및 헷지비용 및 차입 이자를 포함하여 은행에 지급하는 보수
- 3) 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한 비용 (주권 예치 포함) 및, 회사의 상장과 관련된 비용 (신주 등의 발행과 관련한 해당계약 상 지급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 포함)
- 4) 증권선물거래소에 회사의 상장 또는 회사 주식의 공식 호가를 위한 경비 및 비용 및 여하한 증권거래소의 규율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 5) 회사에 대한 청구, 분쟁 또는 소송과 관련한 비용
- 6) 법 또는 규제기관의 요청 또는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 7) 투자유가증권의 예치 및 결제에 대한 비용
- 8) 투자유가증권 가격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
- 9) 주주총회의 개최와 관련한 비용, 주주의 결의 및 주주와의 통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10) 민투법, 정관 및 투자설명서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와 관련한 비용
- 11) 회사의 대리인, 계약자 및 고문 (법률 고문 및 금융 고문 포함)의 선임과 관련한 보수 및 비용
- 12) 회사 및 회사 자산의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기타 비용

자산운용회사는 위와 같은 비용을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회사 및 다른 법인을 대신하여 취득한 투자 또는 취득할 투자와 관련한 비용의 경우, 이를 각각의 투자비율에 상응하도록 배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회사는 자산운용회사, 운용회사의 임직원, 대표 및 대리인, 그리고 계약자들이 운용협약의 위반 또는 중대한 태만, 사기,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의해 발생시킨 비용을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위탁계약상의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 및 간접적인 비용 (완전보상기준으로 법률 비용 및 손실을 포함)을 보상할 것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회사 사무실 임대료, 컴퓨터 사용료, 급여,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간접비용 및 일반운영비용 등과 같은 내부적 행정 비용에 대하여는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의무 및 책임

- 1)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고,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 (1) 회사를 대신해서 투자 및 투자회수 기회의 발굴, 평가 및 실행하는 업무
- (2)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평가, 운용 및 개발하는 업무 (보험 관련 업무 포함)
- (3) 회사를 대신해서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를 추천하고 임명되도록 하는 업무
- (4)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범위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업무
- (5)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자본조달계획의 실행 및 자산의 개발 및 유지업무를 감독하는 업무
- (6) 회사가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요구사항 (회사를 대리하여 전문가 및 기술자문을 고용하는 업무를 포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일일 업무, 행정사항, 회계 및 보고의무에 관여하는 업무
- (7) 회사가 관련 법률 및 계약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업무
- (8)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 자산의 평가를 수행하거나 수행토록 하는 업무
- (9) 관계법령 및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회사의 감사받은 연간 회계보고서 및 감사받지 않은 반기 회계보고서를 준비하는 업무
- (10)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및 납부금 등의 계산 및 지급을 준수하는 업무
- (11) 투자를 포함한 회사 자산 및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관련 법령상 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주들과의 관계 및 의사소통을 관리하는 업무
- (12) 투자대상회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문 및 기타 전문가 등을 추천, 제공, 확보하는 업무
- (13) 회사가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차입과 관련된 의견을 제공하고, 자금필요 시점 및 자금조달 시점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며, 채무 또는 증자 (주식발행)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투자설명서 (prospectus or offering memorandum) 또는 다른 공시서류 및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검토하며, 배포하고 홍보하는 업무
- (14) 자본 증가 및 자본 감소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조언하는 업무.
- (15) 회사의 은행계좌 및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계좌를 개설하고, 폐쇄하며,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고 인출하는 것을 포함)
- (16) 분배금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 조언하는 업무
- (17) 일반사무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등의 수탁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업무
- (18)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상 자산운용회사의 책임과 의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타 업무

자산운용위탁계약, 정관 및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능 또는 의무 사항들 중의 일부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면,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그런 업무를 위탁하거나 일반사무관리회사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자산운용회사는 관련 법률, 규칙 및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자산운용회사의

활동, 회사의 투자상황, 회사의 자산, 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회사에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운용회사는 회사의 요청시 주식을 회사의 요구 및 간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 따라서 회사의 주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 (1)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투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개월에 1회 이상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간투법 제121조 제2항 제1호의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간접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우송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투자회사로서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간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3)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자산운용회사가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기준가격(NAV)의 공시

- (1) 회사는 민투법상 투융자회사로서 매일 기준가격을 산정하되 공고·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 (2) 회사는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회사의 분기말 기준가격이 포함된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영업보고서를 금감위, 자산운용협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 운용위탁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법령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회사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위탁계약 및 자산운용회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 2/3이상의 주주들의 의결로 자산운용회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90일 이전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위탁계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의 자가 회사의 자산과 관련하여 임명되는 경우, 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것이 치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치유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서의 선임을 사임할 수 있으며 회사에 90일 이전 서면통지를 행하여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대체업체 선정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 자산운용회사가 이와 같이 사임하는 경우 사임 전에 대체업체를 선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산운용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사임이 유효하게 되는 시점까지 회사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업체를 찾는 것을 돕는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만약 법인이사로서 자산운용회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자산운용회사가 정관에 따라 주주들에 의하여 법인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신규 자산운용회사가 선임되어 정관에 따라 회사의 법인이사로 선택될 때까지 회사의 자산운용회사로 계속 행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중대한 과실, 또는 상장 이후 연속되는 16 분기중 최소 14분기이상 자산운용위탁계약이 정하는 성과에 미달되는 “성과미달” 등 이외의 사유로 자산운용회사의 선임을 철회하거나,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회사 법인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하여 자산운용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자산운용회사에게 다음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i) 자산운용위탁계약이 해지된 날까지 지난 4분기간에 걸쳐 자산운용회사에게 지급된 모든 운용보수 3배 (ii) 자산운용회사의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분기의 남은 일수 및 차후 12분기동안,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로서 지위를 가졌다면 해당 분기와 관련하여 받았을 성과보수와 같은 금액.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여전히 회사의 자산운용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의해 그 계약하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되는 시기와 방식으로 그러한 보수는 지급될 것입니다. 추가로 상장성과보수와 해당 경과이자의 미지급분이 존재한다면, 에스크로계좌에서 자산운용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운용회사에 지급될 것입니다.

“성과미달”은 첫번째 분기를 포함해서 어느 분기에라도 “성과수익”이 “성과기준수익”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PR1 = \left[\frac{B1 - IP1}{IP1} \right]$$

“성과수익(PR1)”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PR1 = 상장일에서 해당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성과수익

B1 = 보고대행기관에 의해 산정되거나 보고된 것으로 해당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동안의 (또는 첫번째 분기의 경우 첫번째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이나 또는 상장일로부터 첫번째 분기말 거래일(포함)까지의 거래일수 중 적은 거래일동안의) 매일증가합계지수의 평균치

IP1 = 보고대행기관에 의해 산정되거나 보고된 것으로 최초 거래 이전 상장일자 주식에 대한 최초합계지수가치(최초주식공모가격을 나타냄)

“성과기준수익(PBR1)”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PBR1 = (1+X)^{(N1/365)} - 1$$

PBR1 = 상장일부터 현 분기말일까지의 기간동안 성과 기준수익

X = 3.0%와 N1이 나타내는 해당 기간동안 연율화된 물가상승율(N1이 시작하는 날과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N1이 끝나는 날 전에 마지막으로 공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사이의 변화를 바탕으로 계산됨) 중 낮은 수치)

N1 = 상장일로부터 현 분기말일 (당일 포함)까지의 일수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가 회사의 법인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들에 의해 이사로서 재임명이 되지 않더라도 자산운용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자산운용회사가 선임되고, 법인이사로 임명되는 기간까지는 회사의 자산운용회사로서의 역할이 지속되게 됩니다.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가 법인이사로 재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자산운용위탁계약이 유효한 한 자산운용회사가 법인이사로 재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위탁계약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회사는 맥쿼리 또는 (그리고) 신한금융그룹 브랜드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위탁계약은 회사의 청산 또는 종료시 해지될 것입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아래 표는 자산운용사의 최근 2년간의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입니다. 자산운용사의 결산일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아래의 요약 정보는 금감위 및 자산운용협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가. 요약대차대조표

과 목	(단위: 백만원)	
	2007. 3. 31 현재	2006. 3. 31 현재
유동자산	29,518	120,567
고정자산	1,083	475
자산총계	30,601	121,042
유동부채	12,052	37,136
고정부채	2,794	1,415
부채총계	14,846	38,551
자본금	3,000	3,000
이익잉여금	12,755	79,533
자본조정	-	(42)
자본총계	15,755	82,491
부채 및 자본총계	30,601	121,042

나.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과 목	2006. 4. 1 ~ 2007. 3. 31	2005. 4. 1 ~ 2006. 3. 31
영업수익	30,577	123,081
영업비용	14,349	13,349
영업이익	16,228	109,732
영업외수익	995	-
영업외비용	1,613	8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610	109,649
법인세비용	4,354	30,141
당기순이익	11,256	79,508

4. 운용자산 규모

맥쿼리신한자산운용에서 운용중인 투자회사의 자본총계는 1,702,698백만원인데 이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회사의 주식발행총수에 주당 순자산가치를 곱한 것으로서 앞서 11p에서 언급한대로 주당 순자산가치는 자산의 재평가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전환사채와 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 따라서 시장이나 독립적인 투자자가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자산의 시장가치나 미래 순수익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맥쿼리신한자산운용은 간투법에 따라서 자산운용업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허가 조건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한 운용전문인력을 3인 이상 상근 임직원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자산운용협회에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맥쿼리신한자산운용의 임직원 명단입니다.

성명 (협회등록번호)	연령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기간
			운용중인 다른간접 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이재균 (06-02323-0002)	1964	수석 운용전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재균 전무는 맥쿼리그룹 입사 전 신한은행에서의 14년 경력을 포함하여 금융 및 은행 부문에서 17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신한은행 입행, 국제부, 뉴욕지점/투자금융부 등에서 투융자업무 담당 ■ 일해연구소(현 세종연구소) 경제사회 연구실 근무 ■ 2003년 6월부터 맥쿼리인프라 운용 담당
김종호 (06-02323-0004)	1962	자산관리 담당상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종호 상무는 맥쿼리그룹 입사 전 다음과 같은 경력을 포함하여 자산관리부문에서 20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Connel Wagner Group 근무 ■ 영국 Mott Macdonald Group 근무 ■ BHP Engineering 근무 ■ Egis consulting/GHD 근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유료도로 운용) ■ 2004년 8월부터 맥쿼리인프라 운용 담당

박종혁 (08-02323-0005)	1967	자산매입 담당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종혁 이사는 맥쿼리그룹 입사 전 국민은행 투자금융 부서에서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근무 (3개 항만시설과 7개 유료도로 및 2개의 부동산 프로젝트의 매니저)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위원으로 자문활동
원범식 (06-02323-0001)	1967	자산관리 담당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원범식 이사는 맥쿼리그룹 입사 전 인프라관련 건설 및 자산 관리부문에서 13년간 근무했으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산건설(주) 국제영업부 민자사업 담당 / 외주관리 및 구매 담당 ■ 2005년 1월부터 맥쿼리인프라 운용 담당
이정석 (06-02323-0003)	1973	자산관리 담당차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정석 차장은 건설과 자산관리 부문에서 12년이상 근무했으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Parsons, Brinckerhoff, Quade & Douglas Co., Ltd ■ Parsons, Brinckerhoff Asia Co., Ltd. ■ 2004년 12월부터 맥쿼리인프라 운용 담당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본 투자회사는 간투법에 따라 아래 판매회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런던증권거래소에 각각 상장되었는 바, 회사가 기 발행한 주식은 아래 판매회사를 포함한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삼 성 증 권 (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빌딩 Tel: 2020-7586	www.samsungfn.com
굿 모 닝 신 한 증 권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번지 굿모닝신한타워빌딩	www.goodi.com
맥 퀴 리 증 권 (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0번지 한화빌딩 9층 Tel: 3705-8738	www.macquarie.com
교 보 증 권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번지 교보증권빌딩 Tel: 3771-9095	www.iprovest.com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동양종합빌딩 Tel: 3770-2675	www.myasset.com
한 화 증 권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번지 한화증권빌딩 Tel: 3772-7432	www.koreastock.co.kr

III. 자산보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번지 전화: 3770-8800
회 사 연 혁 (홈페이지 참조)	http://www.ksfc.co.kr/

2. 주요 업무

가. 자산보관위탁계약의 개요

- 1) 계약기간 : 회사와 한국증권금융(주) 사이에 체결된 자산보관업무 위탁계약은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회사의 청산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 2) 자산보관보수 : 당해 분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각 날에 회사의 위탁자산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후에 당해 분기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회사 위탁자산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연 0.030/100을 곱한 금액
- 3) 자산보관보수의 지급시기 : 보관보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바로 다음 영업일에 회사의 지시 및 관련수탁회사의 조치에 따라 지급
 -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 (2) 회사 정관에 의한 해산
 - (3) 자산보관업무 위탁계약의 종료

나. 주요업무

자산보관회사는 회사의 정관,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산보관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1) 자산보관회사는 회사명의로 자산보관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회사를 위하여 취득하기로 결정한 “ 투자자산” 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취득, 위 자산보관계좌에 보관하여야 함
- 2) 자산보관회사는 위탁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 관리하여야 함
- 3) 자산보관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산의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함
- 4) 자산보관회사는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신주납입대금, 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하여) 지시한 바와 같이 예금계좌로부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관련수탁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 수수료의 입출금, 영업외 비용의 입출금, 회사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전의 입금 및 이에 대한 상환원리금의 출금, 이자 및 배당금의 입출금 그리고 회사 또는 관련수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거나 지불한 모든 현금을 관리하여야 함
- 5) 자산보관회사는 회사를 대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탁자산의 세부사항을 매월마다 작성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제공.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회사가 제공한 보고서가 회사의 자산내역에 관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제공해 줄 것을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요청하여야 함
- 6) 자산보관회사는 투자자산으로부터 분배금 (배당금, 분배금, 매각대금, 사채의 원리금, 대출원리금, 예금이자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을 추심하고 이를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 7) 자산보관회사는 권리증서를 수령하거나 인도하며 권리증서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

요한 조치를 할 것

- 8) 자산보관회사는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책임이 중개인이나 거래상대방에 있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소송, 가압류, 청구, 비용 및 경비 등에 책임이 없고, 회사의 비용으로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 9) 자산보관회사는 투자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내재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자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통지를 자산운용회사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고, 자산운용회사가 그 통지에 대처할 때까지 투자자산과 관련된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10) 자산보관회사는 현금을 지불받기 위하여 수표와 어음에 배서하고 지급금액을 추심하여야 함
- 11) 회사가 행한 대출채권의 원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산보관회사는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최고하는 통지문을 발송하고, 자산운용회사에게 일정한 일자까지 원리금의 추심에 대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자산보관회사는 위 통지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반대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회사의 권리가 상실되어도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12) 자산보관회사는 여유자산인 회사의 현금을 회사 또는 관련수탁회사에 의하여 별도로 지시받지 않았거나 또는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13) 자산보관회사는 제1호의 투자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담보취득을 지시 받은 경우 담보를 취득하고 관련 법령 등과 금융관행에 따라 담보물을 관리하여야 함.
- 14) 자산보관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자산보관회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예를 들면, 간투법 제131조 제2항, 제132조 등이 규정하는 확인 및 보고)을 이행하여야 함
- 15) 자산보관회사는 간투법 제176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간투법에 따라 등록되어 인가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음

다. 의무 및 책임

- 1)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회사정관, 자산보관위탁계약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2) 자산보관회사는 수탁받은 간접투자재산과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간접투자재산 사이에 거래를 할 수 없으나, 간접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3) 자산보관회사는 수탁받은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신탁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와 관련된 운용을 포함) 또는 자기가 영

위하는 간접투자증권 판매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4)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간접투자자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5)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6)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행위가 법령, 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7) 자산보관회사는 법령 및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외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번지 외환은행 본점 23층 전화: 02-729-8402
회사연혁	설립일: 2003년 4월 1일 자본금: 25.5억 종업원수: 69명

2. 주요 업무

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개요

- 1) 계약기간: 회사와 외환펀드서비스(주) 사이에 체결된 일반사무관리업무위탁계약은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회사의 청산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보수: 당해 분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각 날에 회사의 순자산가치의 합을 당해 분기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회사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에 연0.0175/100을 곱한 금액
- 3) 일반사무관리보수의 지급시기: 매 분기의 마지막 날 (3/31, 6/30, 9/30, 12/31에 끝나는 매 분기)의 바로 다음 영업일에 지급

나. 주요 업무

-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2) 주주명부 유지
- 3) 명의개서 대행

- 4) 주주에 공지사항 통지
- 5) 판매회사의 요구시 관련 주주의 거래계좌에 주식을 예탁
- 6) 관련 법령의 한도내에서, 필요한 경우, 주주에게 실물 주식 발행 및 전달
- 7) 주식 거래 기록 유지
- 8) 서류제출 협력, 공공 기관·규제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기타 관련 조치
- 9) 회사의 용역 제공자에 대한 보상, 비용 및 일반비용의 지불 및 기록
- 10) 회사 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치(NAV) 및 신주의 가격 산정
- 11) 자산운용보수의 계산
- 12) 납세 신고서의 준비 및 서류정리
- 13) 매월마다 자산보관회사에 회사 자산의 종류 및 상세사항에 대한 공지 및 확인
- 14) 재무제표, 연간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준비 및/또는 제출 협력
- 15) 회사 현황 유지 협력
- 16) 기타 위 업무의 부수업무

다. 기타

외환펀드서비스(주)는 간투법상에 허용된 주식등록 서비스 및 명의개서대리 서비스를 위임하기 위해 한국증권에탁결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계약체결에 따라, 한국증권에탁결제원은 회사의 주식등록기관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업무하는 것에 대해 외환펀드서비스(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라. 업무재위탁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간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제164조에서 정하는 다음 이외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단순 실행업무 제외)
- 2) 간접투자재산의 계산업무
- 3) 업무를 수탁받은 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의무 및 책임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받은 업무를 해태하거나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에 의해 행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일반사무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채권평가회사가 간투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나이스채권평가주식회사	한국채권평가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한섬빌딩 6층 전화: 02-398-3900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전화: 02-399-3350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www.npricing.co.kr/	www.koreabp.com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간투법에 따라 회사의 자산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2개의 채권평가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산운용사의 채권평가위원회는 채권평가회사의 보고서를 기초로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4부. 주주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주주의 권리

1. 주주총회·이사회 및 의결권

가. 주주총회 및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

매 회계년도 말부터 석 달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동안 주주명부는 폐쇄됩니다. 자산보관회사 혹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사전에 서면으로 주주총회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제출하여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이사회는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자산보관회사 또는 주식 총수의 5% 이상의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간투법 관련 규정상 이와 같은 상법상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요구권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판례가 없으므로, 상법상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요구권이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와 아울러, 증권거래법은 6월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 1.5%)이상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유한 주주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최소 2주전, 주주들에게 서면 (전자우편 포함)으로 총회의 일자, 장소 또는 일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 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의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증권거래법은 6월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0.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이러한 주주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주주는 주주총회 통지를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에 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에 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연기 주주총회

주주총회가 예정된 시간의 1시간 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주식총수가 전체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미만일 때, 회사는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그렇게 연기되면, 이사회는 원래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를 재소집할 것입니다. 주주총회 재소집의 공고는 새로운 주주총회일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주주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재소집된 주주총회 예정시간의 1시간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주식총수가 전체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미만일 때, 그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주식총수로 주주총회가 제시시간에 소집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의결권 요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전체발행주식총수의 1/4 및 참석주주 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주식수의 과반수로 확정 의결권으로 승인됩니다. 주주총회 참석주주 주식총수의 2/3이상 및 전체발행주식총수의 2/3이상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주식수의 2/3이상의 확정 의결권으로 승인됩니다.

3) 의결권행사

회사 보통주 보유 주주는 1주당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의 경우 집중투표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간투법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출석해야 성립합니다. 보통결의의 경우, 적어도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동의와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434조에 의한 특별결의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의결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정관 및 관련 규정, 관련 약정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 (1) 이사의 선임
- (2)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 및/또는 자산보관회사의 변경(변경이라 함은 새로운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의 선임 또는 기존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의 해임을 의미하며, 동일한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재선임은 제외)
- (3) 회사의 해산
- (4)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게 지불할 보수 또는 수수료의 인상, 회사 존립기간의 변경, 간투법 제27조에 의한 회사 종류의 변경 등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 (5)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지정되는 기타 사항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대한 보수 및 기타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결의, 자산보관회사의 변경, 간투법 제27조에 의한 회사 종류의 변경 등에 관련된 정관변경결의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의 변경 및 회사의 존립기간의 변경에 대한 결의는 모든 발행주식수

기준 2/3 이상의 동의에 따라 채택가능합니다.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대리인은 주주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대리인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위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주는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가 송부한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합니다.

4) 반대주주

타 회사와의 합병, 또는 정관의 특정 조항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 (1) 이 권리를 실행하려면, 주주는 해당 주주총회가 있기 이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은 해당 결의안이 통과된 후 20일 이내에, 처분을 원하는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2) 관련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회사는 주주들에게 어떠한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 (3) 위에 설명한 주식의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의 항과 같이 주식을 매수할 것이나, 만일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4)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의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자 (영업일 기준)로 산정된 주당 순자산가치 (NAV)로 결정합니다.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일 15일 전부터 주주총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만일 영업일이 아닐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 15일간의 거래소의 주식 종가의 거래량 가중평균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합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일로부터 35일 이내에 매수대금을 주식매수청구를 한 반대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 주주의 기타권리

상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6개월 이상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이사의 직무에 관련하여 회사가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러한 요구가 제기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난 후에 회사가 회복불능의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주주는 30일의 대기기간없이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감독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통제 및 책임 체계를 포함한 회사의 운영을 감독합니다. 이사회는 자산운용사 및 기타관련 용역 제공사의 활동을 포함한 업무활동 감독, 주식 발행을 포함한 자본관리, 재무 및 기타 보고의 승인 및 감독을 합니다.

회사 이사회는 1명의 법인이사와 2명의 감독이사, 총 3명의 이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간투법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법인이사가 됩니다. 이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명됩니다.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계년도말 그 회계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정기주주총회의 폐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정관에 따라 재선임될 경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아래 표는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회사 이사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명	임명일	임기 만료 ^{주(1)}	직위
맥쿼리신한자산운용	2005. 11. 11	2008. 11. 11	법인이사
조대연	2007. 3. 23	2010. 3. 23	감독이사
송경순	2005. 3. 31	2008. 3. 31	감독이사

주(1) :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됨

이사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맥쿼리신한자산운용

자산운용회사인 맥쿼리신한자산운용은 회사의 법인이사입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3부의 자산운용사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대연

조대연은 2002년 12월 12일에 감독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조대연은 1979년부터 서울 소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금융 및 유가증권, 국제통상, 분쟁해결(통상분쟁 및 국제 중재), 인수 합병 및 분사(도산관련 실무 포함)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금융 및 통상 업무 전반과 특히 Private Finance 업무를 담당하는 Senior Partn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대연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등 다양한 한국 정부 부처 업무에 자문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해외통상법을 포함한 많은 입법 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조대연은 한국국제거래법학회(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의 고문(Senior Advisor),

한국무역중재위원회(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중재위원, WTO 한국 대표 후보, WTO 보조금및상계관세위원회(WTO's Subsidy and Countervailing Duties Committee) 패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송경순

송경순은 2005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감독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송경순은 재무 및 경제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World Bank 부총재의 자문역을 역임했습니다. George Washington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송경순은 경제기획원(현재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신)에서 근무하였으며 Nomura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Limited에서 수석 부사장 (COO)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누구도, 직전 5년간, 금융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경영관리 또는 감독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그의 능력과 관련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이사진의 보수

2007년도에 지급된 감독이사의 총보수는 128백만원입니다. 현재 각 감독이사의 보수한도는 월 최대 8백만원입니다. 감독이사에게는 급여를 제외한 퇴직금, 위로금 등 기타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결산일	매년 12 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시기	매년 1월1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	공고게재 신문	헤럴드경제신문 또는 서울경제신문
주권의 종류	13권종(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일십만주권, 일백만주권, 일천만주권, 일억주권, 일십억주권)으로 발행 예정임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증권예탁결제원

2. 잔여재산분배

가. 결산 또는 청산분배금의 지급 청구

- 1) 주주는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결산분배금과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자산보관회사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소멸시효: 주주가 이익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의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주주에게 청산 분배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회사에 귀속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청구권

가. 주주는 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주주에 관련된 회사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 및 판매회사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1) 회사 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2) 회사 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3) 회사의 청산에 따라 법이 정한 보존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주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다. 회사,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가.의 사유로 인하여 주주의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이하 관련수탁회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수탁회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사 및 회계감사인, 또는 다른 관련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가 간투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5. 재판관할

가.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회사와의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주주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의 대표소송

상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주식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30일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30일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주권의 발행 및 예탁

- 1) 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2)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투자회사고객계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 (1) 주주의 성명 및 주소
 - (2) 예탁주식의 종류 및 수
 - (3) 위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은 그 기재시에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봅니다.
 - (4) 투자회사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항에 의해 예탁주권을 점유하며, 예탁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다. 예탁 주권의 교부 등

- 1) 실질주주는 당해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회사에 주권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위에 의한 예탁주권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100,000주권, 1,000,000주권, 10,000,000주권, 100,000,000주권, 1,000,000,000주권의 13종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실질주주는 주권의 교부를 요구함에 있어 주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주권의 재교부

- 1) 주주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을 경유하여 회사에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주주는 주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3) 회사는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주주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주식의 양도

- 1)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2) 판매회사가 보관하는 회사 고객계좌부상 주권의 양수도 또는 질권이 기록될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당해 주권이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주식의 양수도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주권의 교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바. 명의개서대리인

-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회사와 일반사무관리회사간에 체결한 일반사무관리계약에 기재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임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외환펀드서비스^(주)는 명의개서대리인 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재위임하였습니다).
- 2) 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회사의 주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 3) 당해 회사의 주권을 보유한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4)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5)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상기 3) 내지 5)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사. 회사의 정관 등 회사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회사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회사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회사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가. 자산운용보고서

- 1) 자산운용회사는 매 3월마다 또는 펀드 존립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 2)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3) 자산운용보고서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mki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자산보관회사보고서

- 1) 자산보관회사는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주주에게 서면으로 우송합니다. 이 경우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장투자회사에 대한 자산보관회사보고서는 간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자산보관회사는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금감위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영업보고서

- 1) 회사는 매 분기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하여 금감위, 자산운용협회 및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금감위, 자산운용협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감사보고서

- 1) 회사는 회사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존립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2) 회계감사인인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준가격계산서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자산운용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보고서를 금감위, 자산운용협회, 판매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가. 정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인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 정관의 변경사항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모든 주주에게 통지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변경

- (3) 회사 존립기간의 변경
- (4) 간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 종류의 변경
- 2) 위 1) 외의 회사 정관의 변경사항은 헤럴드경제신문에 공고(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문에도 공고)하거나 전자통신을 통하여 1회 이상 공고합니다.
- 3) 위 1) 및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

- 1) 의결권 행사 여부
- 2) 회사는 민투법에 따라 간투법 제94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바 보유한 자산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3) 의결권 행사 방향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1)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 (2)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 (3)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다. 의결권 행사 방법

- (1) 자산운용회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1)의 방법 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수시공시사항

회사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4)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 5) 회사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8) 회사가 런던증권거래소에 공시하는 경우,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동일한 내용을 공시
- 9)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10)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매각결정을 한 때(지배하는 SPC를 통하여 이뤄진 경우를 포함)

- 11) 500억원 이상의 투자집행을 하거나 투자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 때
- 12) 투자한 사업의 실시협약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
- 13) 100억원 이상의 자금차입이 이루어지거나 사채발행 결정이 있는 때
- 14) 분기별 NAV 산출
- 15) 사업시행자의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시
- 16) 회사가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내용

마. 수시공시의 방법

- 1)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 2)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 3)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자산운용협회 및 회사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2 펀드회관	Tel: 2122-0181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www.mkif.co.kr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1층	Tel: 3705-4921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

- 판매일 : _____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